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[별지 제6호 서식]

경 고 장

기 관 명	하 동 군
위반 및 처분내용	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등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,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, 임용인원, 임용등급 및 기간, 임용자격, 공고계획, 임용요건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내정된 특정인에 맞춰 응시자격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공고하는 등 채용절차 및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귀 기관을 엄중 「**경고**」 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2020 년 7 월 20 일

행 정 안 전 부 장 관 해정안전부장관인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